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서초 제1선거구)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공공준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 (안 제55조제16항 개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2월 14일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했고,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